

젓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6
----------	------

발의연월일 : 2005. 8. 12.

발 의 자 : 이은영 · 문병호 · 정성호
민병두 · 장영달 · 김애실
최재성 · 노영민 · 이경숙
선병렬 · 홍미영 · 조배숙
장향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무분별한 광고와 판촉활동 등으로 모유대체식품과 1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젓먹이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저출산 등과 맞물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WHO(국제보건기구)가 이미 규정하고 있는 모유대체식품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의 취지에 따라 모유대체식품 관계자들과 모자보건 관련 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모유와 면기저귀를 권장하는 등 젓먹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젓먹이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젓먹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젓먹이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젓먹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젓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젓먹이건강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유권장지침을 수립하여 모자보건관련기관등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조업자등에게 책무를 부여함(안 제7조).
- 바. 홍보 및 교육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 모자보건관련기관등으로 하여금 모유먹이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모유먹이기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모유권장을 위하여 일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아. 제조업자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판촉행위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

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모유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모유먹이기에 지장을 주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기저귀 제조업자등으로 하여금 젓먹이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사용을 금할 것과 면기저귀의 사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모유대체식품, 모유대체기구나 젓먹이용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80일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젓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젓먹이 건강증진에 관한 보건정책을 바르게 수립·추진하게 하여, 모유권장 및 젓먹이 용품의 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젓먹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젓먹이”라 함은 출생 후 12월이 지나지 않은 아기를 말한다.
2. “모자보건관련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나.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

다. 「모자보건법」 제2조의 모자보건요원

라. 「약사법」 제2조제2항의 약사, 동조제3항의 약국 및 그 종사자

- 다. 「지역보건법」 제12조의 보건소 직원 중 의료인이 아닌 자
- 바. 산모의 산후조리를 보조하거나 젓먹이를 돌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사.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
3. “모유대체식품”이라 함은 모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보충하거나 모유에 첨가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분유(특수분유 포함한다)·이유식 또는 이와 유사한 모유보조식품을 말한다.
4. “모유대체기구”라 함은 젓병·고무젓꼭지(노리개젓꼭지를 포함한다)등 젓을 먹이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5. “젓먹이용품”이라 함은 의류·기저귀·장남감 등 젓먹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6. “제조업자등”이라 함은 모유대체식품, 모유대체기구, 젓먹이용품 등을 제조하거나 가공·수입·판매하는 자 등을 말한다.

제2장 젓먹이건강에 관한 보건정책

제3조(젓먹이건강증진 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젓먹이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젓먹이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젓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젓먹이의 사망률 및 질병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3. 모유권장을 위한 정책방안과 그 성과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모유대체식품, 모유대체기구, 젓먹이용품의 규제에 관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젓먹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젓먹이건강증진 추진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젓먹이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젓먹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젓먹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2. 젓먹이의 사망률 및 질병률을 낮추기 위한 계획
3. 모유권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해 필요한 시설(냉

동모유수유를 위한 착유실 포함)의 설치 및 수유시간 할애에 관한 사항

5. 모유대체식품, 모유대체기구, 젓먹이용품의 광고제한에 관한 사항
6. 1회용 기저귀 대신 면기저귀의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
7. 그 밖에 젓먹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젓먹이건강증진위원회) ①젓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젓먹이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모유권장을 위한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젓먹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젓먹이건강 관련 전문가
2.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젓먹이건강 관련 부처의 차관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모유권장

제6조(모유권장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유권장지침을 수립하여 모자보건관련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모유권장을 위한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계획 및 추진계획에 따라 모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교육·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조업자등은 모유대체식품 또는 모유대체기구로 인하여 젖먹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일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의 주요내용)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자건강증진의 효과 등 모유의 좋은 점
2. 모유를 먹이기 위한 산전준비와 산후관리
3. 모유와 모유대체식품을 섞어 먹이면 모유만을 먹이기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출산 직후부터 모유먹이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모유먹이기가 어려워진다는 점
5. 불가피하게 모유대체식품을 먹여야 할 경우 그 적절한 사용 방법
6. 젖먹이의 부모 및 그 가족구성원의 협조 필요성
7. 그 밖에 모유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제4장 모자보건관련기관의 책무

제9조(모자보건관련기관등의 의무) ①모자보건관련기관등은 모유먹이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모유먹이기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입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2호의 모자보건관련기관등은 모유를 먹이기에 편리한 시설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2호 나목의 의료기관은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엄마젖을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모자보건관련기관등의 행위제한) ①모자보건관련기관등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제조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의 투자·지원·보조를 받거나 무료 내지 시가보다 저렴한 모유보조식품이나 모유대체기구의 공급 또는 금품·향응·편의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모자보건관련기관등은 모유대체식품의 상품명이나 제조업자등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모자보건관련기관등은 모유대체식품의 판매·광고행위에 가담하거나 그 사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모자보건관련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유를 먹이는데 지장이 되는 시설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부모의 동의 없이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자보건관련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모 또는 그 가족이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젓먹이에게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모가 사망한 경우
2. 산모가 젓먹이를 유기한 경우
3. 산모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4. 젓먹이가 모유를 먹을 수 없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관련기관등은 산모 및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모유대체식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⑦모자보건관련기관등은 그 사용하는 모유대체식품의 제품명, 회사명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제조업자등의 책무

제11조(제조업자등의 의무) 제조업자등은 젓먹이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최고의 기술력으로 제품 생산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2조(제조업자등의 판매촉진행위 등의 제한) ①제조업자등은 모유대체식품이나 모유대체기구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모자보건관련기관등에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한 모유대체식품 또는 모유대체

기구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조업자등은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임산부 및 젓먹이를 양육하거나 양육할 자 및 모자보건관련기관등에게 모유대체식품 및 모유대체기구의 견본품, 시제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조업자등은 모유대체식품이나 모유대체기구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판매종사자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접촉을 통한 홍보·교육 및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조업자등은 모유대체식품이나 모유대체기구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그 판매종사자, 모자보건관련기관등에게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외의 내용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조업자등은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모유대체식품 및 모유대체기구를 특수진열(젓먹이·유아·부모 등의 주목을 끌기 위해 다른 상품과 차별화하여 진열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판매, 끼워팔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조업자등의 광고 등의 제한) 제조업자등은 모유대체식품이나 모유대체기구에 관하여 신문·방송·잡지·통신·전파·인터넷·옥외광고, 그 밖의 인쇄물·영상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중요표시사항 및 표시의 제한) ①제조업자등은 모유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젓먹이의 월령에 따른 사용방법 등 모유대체식품의 사용시 유의

사항

2. 모유의 우월성 및 지속적인 모유먹이기의 중요성 등 모유권장문구

3. 모유대체식품을 먹일 경우 감염, 알레르기, 과체중 등 위험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

4. 사용원자재, 제품의 성분분석, 보관방법, 제조일자 및 유효일자

5. 잘못 사용시의 위험에 대한 경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는 알기 쉽고 뚜렷하여야 하며, 쉽게 벗겨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③제조업자등은 모유대체식품에 표시나 상표로 젖먹이, 유아, 모성 또는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유와 같은·모유화 된 그 밖에 모유와 대등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거나 그와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조업자등은 모유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초유 등 모유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 질병예방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문구, 의료인의 명칭 그 밖에 소비자를 현혹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젖먹이용품 제조업자등의 의무) 젖먹이용품 제조업자등은 젖먹이가 사용하는 의류, 기저귀, 장난감 등의 제조시 젖먹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기저귀 제조업자등의 행위제한) ①기저귀 제조업자등은 젖먹이

의 건강에 유해한 어떠한 물질도 기저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기저귀 제조업자등은 면기저귀의 사용을 저해하는 제품표시, 광고, 판촉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 내지 제16조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유대체식품, 모유대체기구나 젓먹이용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항의 시정명령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유대체식품, 모유대체기구나 젓먹이용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80일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8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모유대체식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제7장 벌칙 등

제2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